#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

# 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83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2. 11. 1.

4. 회부일자 : 2022. 11. 3.

# Ⅱ. 제안이유

○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(안)을 수립하여 제출함.

# Ⅲ. 주요내용

○ 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'22년도 말 조성액(a)	'23년도 기금운용계획		'23년도 말 조성액(e)	융자금	총규모
		조성계획(b)	집행계획(c)	조% अ(e) (d=a+b−c)	미화수채권 (e)	(f=d+e)
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	2,795,792	1,032,570	830,000	2,998,362	-	2,998,362

### Ⅳ. 참고사항

○ 관련 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.

# 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83호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기금 개관

-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(2019.7.18.)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·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·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요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.

-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분야의 확대·장려 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 확대·활성화를 위해 'DMZ 생태평 화체험' 및 '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' 등의 사업을 추진하 였으나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,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
-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.

#### 나. 수입 지출 계획

- 먼저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, 기금운용수익(이자수입) 3천 2백만원, 예치금 회수 27억 9천 6백만원을 포함한 총 38억 2천 8백만원이며 이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4조 제2항에¹)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,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.
- 한편 동 기금의 지출액은 비용자성사업비 8억 2천 8백만원, 기본경비 2백만원 및 예치금 29억 9천 8백만원을 포함한 총 38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- 서울시교육청이 지출계획에 편성한 비융자성사업비는 점진적인 통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 역사 탐방, 남북학생 간 교류, 북한교육지원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이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<sup>1)</sup> 제14조(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)

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5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<sup>2)</sup> 따른 것으로 형식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다.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

- 그러나 동 기금의 미비한 집행실적이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동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.
-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이 설치된 2020년부터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동 기금에 적립해오고 있으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결국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의해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좌우되는바, 기금이 조성된 뒤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한 기금 사용처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매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관행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

# [표-1]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(지출계획)3)

(단위: 천원)

구분					당초계획 (A)	변경 (B)	증감 (B-A)
		계			1,000,000	1,000,000	-
교 활	수 동	=	학 지	습 원	1,000,000	1	△1,000,000
		Н	교육. 력 사	교 류 업	353,600		△353,600
		예	치	금	646,400	=	△646,400
예 (	비 비 예	및 치	! <i>기</i> 금	l 타 )	-	1,000,000	1,000,000

<sup>2)</sup> 제1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<sup>1.</sup>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
<sup>2.</sup>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<sup>3.</sup>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

<sup>3)</sup> 의안번호 제2032호, 2020.10.16. 제출

# [표-2]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(지출계획)4)

(단위: 천원)
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 (B)	증감 (B-A)	
계	2,000,000	2,002,317	2,317	
비 융 자 성 사 업 비 (교수 - 학습활동지원)	450,000	80,000	△370,000	
예 비 비 및 기 타 ( 예 치 금 )	1,550,000	1,922,317	372,317	

# [표-3]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(지출계획)5)

(단위: 천원)
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 (B)	증감 (B-A)
계	2,933,787	2,955,792	22,005
비 융 자 성 사 업 비 (교수 - 학습활동지원)	933,600	157,600	△776,000
기 본 경 비	2,400	2,400	_
예 비 비 및 기 타 ( 예 치 금 )	1,997,787	2,795,792	798,005

○ 또한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사업계획의 단계적 수립과 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

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기계적으로 '남북 학생 간 문화·예술·스포츠 활동 교류'와 같이 비현실적 사업을 계획해오고 있어 동 기금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<sup>4)</sup> 의안번호 제2930호, 2021.10.15. 제출

<sup>5)</sup> 의안번호 제367호, 2022.10.17. 제출

# [표-4] 동 기금운용계획안 중 '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'

- · 남북 학생 간 문화·예술·스포츠 활동 교류
  - 남북 청소년 음악제, 오케스트라단 상호 초청 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
  - 체육회 및 유관기관 협력 다양한 스포츠 분야 교류
  - 남북 성인 스포츠 교류 재개 시 학생 스포츠 교류 검토
  - ※ 남북정세에 따라 남북 학생 참가 시 서울 학생 중심으로 운영
  - (일시) 남북 공통의 공휴일 또는 기념일 (광복절, 추석, 설날 등) (예정)
  - (장소) 서울, 판문점 등
  - (핵심 활동) 학생 중심 예술문화 공연, 남-북 시, 글, 그림 감상 등
- · 남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
  - 북측 참가 교육, 교수법 혁신 등 미래교육 분야 학술회의
  - 북측 교육전문가 및 교육당국과 연계한 남,북,제3국 활용 학술회의
  - 남북 교육 교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
- ·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
  - 아울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,6)

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'평화공존의 남북교육 교류추진'사업을 실시해오고 있고, 서울시교육청이 동 기금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환경조성사업(통일 축제,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, 통일안보역량 강화 사업 등)도 굳이 기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.

○ 따라서 동 기금 사업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5조7)에서

<sup>6)</sup> 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 ③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<sup>7)</sup>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<sup>1.</sup>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
<sup>2.</sup>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
<sup>3. 「</sup>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
명시한 바와 같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동 기금 설치·운용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### [표-5]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(교육부)8)

- 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가 조정되고 추진 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어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,
-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되고,
- 기금의 실질적인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므로 예산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음.
-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상황에서 굳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재원을 기금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적음.
- 기금 규모가 크지 않고, 최근에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통폐합 대상으로 분석됨.
-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가 유동적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.
- 남북교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년 10억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.
- 2021년 지출계획 4억 5천만원 중 6천 8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15.1%에 불과함. 교육청은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남북교육교류사업 추진이 불가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, 기금 설치 당시인 2020년 9월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임.
- □ 이상으로「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<sup>4. &</sup>lt;u>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8) 「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(안)」붙임.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, pp.180~181.